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39호

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우편번호 연계 도로명주소에 관한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37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6년 12월 7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번호 연계 도로명주소 조정 고시

1. 우편번호 개수 : 34,410개

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: 6,197,706건(2016. 11. 25. 기준)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: 별표 1
-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·북도 : 별표 2
-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·북도, 강원도 : 별표 3
- 광주광역시, 전라남·북도, 제주특별자치도 : 별표 4
- 참고자료(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, 사서함) : 별표 5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(☎044-200-8352)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의 『우편번호 안내』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o 참고자료(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, 사서함)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
2. 우편번호 사용・변경 등

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・변경・폐지(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)에 따라 조정됩니다.

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o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3. 참고사항

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(도로명주소-지번주소)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o 행정자치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.

부칙

1. 이 고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 기한

『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』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.